제8회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회의록

2026. 8. 7.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6. 8. 7.(목) 14:00

○ 출석위원(10명)

○ 민간위원(8명)

- 권태성, 고동수, 고은아, 김기명, 우윤석, 이민창, 정상훈, 정은미

○ 정부위원(2명)

- 국조실, 법제처(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

Ⅱ. 상정안건

연번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구분
①	2026-207 2026-237	농식품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②	2026-235 2026-236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Ⅲ. 회의 결과

1. (심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농식품부)

□ 개 요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사무명	○ 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의 범위 및 준수기준
규제내용	○ 대상기업 범위 (시행령) - ▲대기업, ▲공시대상 기업집단(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기업(농업기준 평균매출액 80~1,000억원) ○ 참여기준 준수기준 (시행규칙) - 한우생산업 참여시 ▲축산 관계법령 준수, ▲저탄소 영농활동 계획 수립,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 확보, 조사료 생산계획 수립 및 이행 준수 - 신규기업은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수립(기존 한우농가에 미칠 영향, 상생방안 등 포함)
위원회 결정 내용	○ [원안동의] ①**이해관계자** 등 **의견 없었고,** ②**규제내용** 등은 **생산자단체 등**과 **농식품부 간의 지속적 협의로 제정**된 것임을 감안 ○ [개선·부대권고] [시행령]향후 영향 **신속한 재검토** 위해 **재검토기한 단축**(3년→2년), [시행규칙]**참여기업**의 **준수기준 준수** 등을 위해 **지원계획 구체화,** 재검토시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지표**의 **사전 보고**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한우산업법의 취지는 자본력·시장대응력이 취약한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중심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생산은 농가가, 유통·판매는 기업이 담당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취지임.

○ (이해관계자) 메탄저감사료, 가축분뇨 처리, 사육기간 단축 등 시행규칙상 준수사항은 이미 국가 시책에 따라 준비·시행 중인 사항이며, 기업의 규모·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 (이해관계자) 시행령·시행규칙상 참여제한은 원천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규제로 판단됨. CPTPP*·메르코수르 등 대외여건 변화 속에서 저가의 해외산 축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우 시장은 차별화·제한된 특수시장(명절 소비 비중 약 50%)이므로 기업 진입이 산업 경쟁력 제고로 직결되지는 않음.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매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 (이해관계자) 한우산업법 제26조는 상징적 성격이 크고, 실질적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봄.

○ (위원장) 사육기간 단축·조사료 확보 기준에 따라 사육했을 때 소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 (이해관계자) 시행규칙상 4개 조치(메탄저감제, 사육기간 단축, 분뇨처리, 조사료)는 모두 탄소중립과 직결되며, 이미 상당수 기존 참여기업이 시행 중으로 품질·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없음. 신규 진입 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농가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함.

(2) 부처 의견 청취

○ (농식품부) 한우 사육농가의 72%가 50두 미만, 200두 이상은 2.6% 수준이며 평균 사육두수는 약 44두임. 중기업 최소기준(매출액 80억원) 충족에는 약 2,200두 사육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본력·경쟁력이 취약한 한우 농가 보호를 위해 신규 진입 기준을 중기업 이상으로 설정함.

○ (농식품부) 참여기준 이행에 따른 마리당 추가비용은 메탄저감제 약 1만원, 저탄소 분뇨처리 약 1만원, 조사료 토지확보(약 95.7평, 임차료 기준) 약 8만7천원이며,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생산비 절감 약 7만2천원을 반영하면 종합적으로 마리당 약 21만5천원(사육규모 100두 이상 기준 매출 대비 약 2.3%) 수준으로 추계됨.

○ (OOO 위원) 지자체 제출의무 삭제 이후 협력계획의 관리·공유 방식은?

○ (농식품부) 협력계획은 지자체가 구성하는 협의체를 통해 참여기업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축협 등)가 의견을 수렴·공유하는 절차이며, 지자체 제출은 의무가 아님.

○ (OOO 위원) 협력계획 미이행 시 처벌·과징금 등 제재 규정 여부는?

○ (농식품부) 현행 법령상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며, 지자체 제출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절차가 됨.

○ (OOO 위원) 신규 진입 이후 매출이 성장하여 중기업 기준(8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은?

○ (농식품부) 규정은 신규 진입 시점에만 적용되며, 기존 진입 기업(예: 현대·한진그룹 계열 등)의 사후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OOO 위원) 본 시행령·시행규칙상 중기업 이상에 대한 참여기준 부과는 탄소중립 규제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진입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규제심사의 3대 기준(필요성·적절성·집행실효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특별법으로 별도 규정할 필요성(일반법 체계와의 정합성), 비용 대비 편익(정성적 편익의 계량화 근거 부족), 진입 예정 기업의 실재 여부(조합형 위탁생산 방식 포함) 파악이 필요하며, 기존 소규모 농가 대상 탄소중립 지원사업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이 법의 목적이 '탄소중립을 통한 산업전환'인지 '한우 농가 보호'인지 혼재되어 있으며, 재검토(2~3년) 시점에 평가할 KPI(예: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부재함.

○ (OOO 위원) 중기업 이상 기준의 적정성은 마리당 추가비용(약 21만5천원, 총 약 4억7천만원 수준)을 고려할 때 타당하나, 장기적으로 전체 한우 농가에 이 기준이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와 연계하여 재검토 시 확대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OOO 위원) 시행령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음.

○ (OOO 위원) 중기업 이하 기업은 오히려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안 동의 후 일부 재검토로 충분함.

○ (농식품부) 법의 목적은 탄소중립과 한우 농가 보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음. 중기업 이상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은 원천 배제가 아니라 투자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며, 조사료 자급률 제고·사육기간 단축·분뇨처리 개선 등은 정부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 중인 정책으로서, 규모가 작은 농가는 의무화 대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규제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효과성 중심의 지표를 구체화하겠음.

○ (OOO 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갈등관리(신규 대규모 기업 진입 시 기존 소규모 농가와의 마찰 가능성)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 설계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위원회 논의

○ (OOO 위원) 재검토 시 탄소중립 목표치(KPI) 제출 및 달성도 점검이 필요함.

○ (OOO 위원) 협력계획(지자체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짧은 기간 내 평가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기존 한우 농가의 탄소중립을 위한 부처 차원의 노력 여부도 재검토 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조실)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핵심지표를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권고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안함.

□ 심의 결과 : 원안 동의(개선 · 부대 권고)

○ 한우산업법의 입법목적(탄소중립 실현 및 한우 농가 경영안정), 이해관계자 의견 및 농식품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비추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다만, 대상 기업의 범위가 향후 한우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신속히 재검토하고자 재검토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개선권고함.

○ 신규 기업이 참여기업 준수기준을 이행하면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하도록 부대권고함.

○ 재검토 시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핵심지표를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권고함.

<2026. 7. 16. 시행령 본심사 회의록>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생산은 농민이, 유통·판매는 기업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현재 마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이 원안대로 제정되기를 희망함. 이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농민과 경쟁하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

○ (이해관계자) 현재 소고기 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고 수입 소고기 관세가 이미 철폐(무관세)되어 있어, 이번 시행령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 현재 참여 기업은 약 6~10개사(평균 사육규모 150~200두) 수준이며, 이들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님.

○ (이해관계자) 생산자단체 입장에서 한우 농가 7만 5천 호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본 법 제정에 협조하였으며, 현재 참여 중인 기업(사료 회사, 미생물제제·수정란 이식 업체 등)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한우 농가의 71%가 50두 미만 소규모이며, 최근 2년 연속으로 생산비 이하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 농가들의 실제 요구는 '80억 이하는 허용'이 아니라 외부 자본의 원천적 배제이나, 타 법령과의 충돌 우려로 현재의 절충안(중기업 이상 기준)을 수용함.

○ (OOO 위원) 진입 규제를 강하게 설정하면 준전업농 이하 대부분 농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업 계열화가 확대되면 정부 지원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 (이해관계자) 분뇨처리·조사료 생산 등 예산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농촌 유지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정부 지원은 단계적으로 변화할 사안이지 당장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함.

○ (OOO 위원) 참여 제한이 영세농의 스케일업(청년농 신규 진입 등)을 저해할 소지는 없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 부담은 논의되었는지?

○ (이해관계자) 국회 논의 당시에도 동일한 질의가 있었으며, 자급률이 낮고 무관세 수입이 이미 확대되어 국내 기업 참여 제한이 소비자 가격을 왜곡할 여지는 없음

○ (OOO 위원) 기업이 이익을 못 낸다면서 왜 규제하는지, 지금처럼 자유롭게 두면 되지 않는가?

○ (이해관계자) 기업은 분뇨처리·조사료를 정부 지원 없이 자체 확보해야 하므로 조건을 두는 것이며, 기업이 실제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분뇨·민원 처리 부담임.

○ (OOO 위원) 시행령이 통과되면 실질적 이익을 보는 주체는 결국 기존 참여 기업 10개사 아닌가? 협회가 이 법에 동의하는 배경은?

○ (이해관계자) 협회는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한우 농가 전체의 생존을 위해 이 법을 지지하는 것

(2) 부처 의견 청취

○ (농식품부) FTA에 따른 관세 인하와 사료비 상승으로 한우 농가 경영비가 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육 농가 수는 2005년 18만 8천 호에서 2025년 7만 4천 호로 60% 이상 감소했음. 소고기 자급률은 40.1%에 불과하며 농가는 2년 연속 순손실 상태.

○ (농식품부) 법 제26조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신규 참여 시 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기존 농가와의 협력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은 그 대상 기업의 범위(중기업 이상)를, 시행규칙은 구체적 준수기준(별표1, 총 6~7개 항목)과 협력계획 세부사항(제10조)을 정하도록 설계됨

○ (농식품부) 이 법은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를 무조건 막는 법이 아니며, 대·중·소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나 자본력이 큰 기업에 한해 환경·상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취지로, 소기업(매출 80억 미만)은 전업농 평균 매출(약 18억) 수준을 고려해 규제를 면제함

○ (농식품부) 신규 진입 시 준수 비용은 1,000두 기준 연 약 2천만 원, 100두 기준도 유사한 수준이며, 대기업 수준 참여기업은 이미 조사료 및 분뇨처리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음.

○ (OOO 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다시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위임하는 이중위임 구조로, 시행규칙이 함께 상정되지 않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OOO 위원) : 결국 '협력계획'에 상대방(기존 농가)이 동의하지 않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 아닌가?

○ (농식품부) 소규모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한 사료·조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기존 정책 수단은 있음

○ (농식품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제도와 유사한 취지이며, 협력계획이 성립하지 않으면 진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임

○ (OOO 위원) 규제 목적 달성 수단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처리 능력(폐기물 처리 설비, 초지 확보 등) 기준이어야 하며, 규모와 협력계획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 (OOO 위원) 법 제26조의 '한우 생산자' 개념이 법령상 정의되어 있지 않고, 기존 기업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OOO 위원) 이 법이 농가 보호(진흥)와 탄소중립(규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실제 자급률·탄소 감축 목표치가 불명확함

○ (농식품부) 본 조항으로 인한 자급률·탄소중립 효과가 정책적으로 직접 연동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함

(3) 위원회 논의

○ (OOO 위원) 이중위임 구조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중기업·소기업을 구분하는 것도 산업별 기준 차이를 고려하면 합리적임. 따라서 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신규 기업의 '배제'가 아닌 '단계적 적용'으로의 재설계, 즉 규모가 큰 기업부터 먼저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전체로 확대한다는 취지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오해 소지를 제거할 필요 있음.

○ (OOO 위원) 시행규칙 없이 시행령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시행령에 시행규칙 기준의 대략적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을 개선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 (OOO 위원) 중기업·소기업을 구분하는 이유가 불명확하므로, 일괄 면제하거나 전면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OOO 위원) 신규 진입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고 기존 기업·농가는 예외로 두는 구조에 대한 합리적 설명 또는 보완 필요함.

□ 심의 결과 : 계속심사

○ 한우산업법 입법목적, 이해관계자 의견 및 농식품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관련 규제인 '한우 생산업 참여기업 준수 기준'(시행규칙)과 함께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계속심사(8. 7.)

< 위원회 주요요청 사항(7. 16.)>

① 시행규칙(안) 및 기준별 구체적 비용 산정 근거
- '100두 기준 연 2천만원' 수치의 산출 근거
  (분뇨처리시설,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등 항목별 세부내역 등)
- 규모·구간별(50두/100두/200두/1,000두) 비용 비교

② 중기업 이상 규모(80억) 기준의 설정 근거
- 처리능력(분뇨처리시설, 초지확보 등) 기준 vs 매출액 기준 비교 검토
- 중기업, 소기업 구분의 실효성(타법령 사례 등)

③ 협력계획 관련
- 부처 표준안 필요성, 미체결시 대응 방향

④ 사후규제영향평가 정책목표 수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기대하는 자급률 개선폭, 탄소저감량 등

⑤ 기존 참여 기업(소급 미적용 대상)에 대한 경과규정·유도방안 등

2.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문체부)

□ 개 요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사무명	○ 입장권 등 부정거래(암표)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등
위원회 결정 내용	□ 개선 권고 ① 신고·수사기관이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삭제 또는 영업 요건을 제외한다' 문구의 위임입법 일탈이 있어 삭제 ② 현장 입장 시 본인확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국민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동 조항 삭제 ③ 부정거래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와 관련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고시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 ④ 부정거래 수법과 온라인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도입되는 제도로 부정거래 예방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을 고려해 재검토 기한 2년 설정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평가기준은 사전에 규합위 보고) □ 부대 권고 ① 일반국민들이 동 규제와 관련한 ▲게시물 삭제·차단 시 통보, ▲이의제기 절차 등 신고사무 처리 집행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신고기관 운영지침'을 조속 마련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반대 측

○ (온라인쇼핑협회)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대량 매수와 조직적·영업적 부정거래를 근절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며,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시장에서 정확히 작동하도록 보완해 달라는 요청임.

○ (온라인쇼핑협회) 시행령(안)의 핵심 문제는 플랫폼에 사실상 위법성 판단을 맡긴다는 점임. 게시글만으로는 실제 취득가격, 거래 성립 여부, 판매자 동의, 타 채널 거래 이력 등 상습성·영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일회성 양도에 대한 오차단과 플랫폼별 기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온라인쇼핑협회) 상시 신고기능 구축, 10시간·24시간 내 처리, 유사정보 탐지에는 개발·모니터링·법무·고객응대 비용이 발생함에도 규제영향분석서에 비용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팀플러스) 암표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으나, 다수의 의무·권리 제한·행정제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정판매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의 적법성과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규모 민원·분쟁이 예상됨.

○ (팀플러스) 법률은 과징금의 산출방법·판매금액 산정기준·부과징수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부정판매의 판단기준을 대체할 수 없음. 「철도사업법」의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규정도 상습·영업의 판단기준이 없어 15년간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었으므로, 동일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함.

○ (OOO 위원) 상습·영업 요건이 반드시 시행령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인지, 시행규칙·고시 등 형식과 무관하게 기준이 명확해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지?

○ (온라인쇼핑협회) 법 체계·형식과 무관하게 기준이 정해지면 협의하여 수용 가능함.

○ (OOO 위원)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판매금액 상한(100만원) 및 판매수량 제한의 내용은?

○ (팀플러스) 예매처가 정한 1인당 예매 수량과 동일하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총 거래금액 상한을 두고 있으며, 본인확인을 통해 1인 1계정 원칙으로 다중계정 생성을 제한하고 있음.

○ (OOO 위원) 탈퇴 후 다른 아이디로 재가입하는 방식의 우회가 가능한 것 아닌지?

○ (팀플러스) 재가입 자체는 가능하나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통상 업계에서는 탈퇴 후 1~3개월간 재가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2)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찬성 측

○ (KBO) 10개 구단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며, 국민이 암표로 인해 원하는 경기를 보지 못하거나 고가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음. 그간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에 대한 기술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함.

○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암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암표 대응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관객이 공연 3~5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불편과 확인 인력·대기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허수 물량으로 팬데이터가 왜곡되며 공연 직전 대량 취소로 공석이 발생하는 등 기획사 매출에도 영향이 있음.

○ (NOL티켓) 암표는 반드시 제재되어야 함. 2차 플랫폼은 암표 가격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므로 공연에 기여한 주체에게 정당한 몫이 배분되지 못함. 종전 공연법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구매'와 '웃돈 판매' 두 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서 플랫폼이 입증하기 어려웠고 실제 처벌 사례가 없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 (OOO 위원) 해외에서는 암표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고 있는지, 매크로 대응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해외는 구매자 변심에 따른 취소가 불가하여 2차 시장을 이용할 실익이 있으나, 국내는 공연 전일·당일까지 취소가 가능하여 2차 시장의 명분이 크지 않음. 매크로는 1차 플랫폼도 기술적으로 짐작만 할 뿐 특정·입증이 어려움.

○ (OOO 위원) 암표 시장의 규모, 총판매 대비 부정거래 물량, 프리미엄 비율 등 중립적인 기초 데이터를 제출받지 못하였음. 취소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2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라면, 정상적인 세컨드 마켓(취소분 재판매)이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도 암표를 줄일 수 있으며, 규제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다른 형태의 암시장을 발생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음.

○ (NOL티켓) 2차 거래 데이터는 2차 판매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어 1차 예매처·구단은 확보가 어려움, 참고로 취소 수수료는 관람 10일 전 10%, 7일 전 20%, 3일 전 30%(최대) 수준임.

○ (OOO 위원) 문제의 본질이 공급가격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암표 가격인지, 예매 후 대량 취소인지를 구분하여야 하며 각각 대응 수단이 다름.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것은 1차 시장의 가격결정 실패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논의 시에는 가격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암표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이유 없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과정이므로 찬반 구도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람.

(3) 부처 의견 청취

○ (문체부) 모니터링 결과 대중음악 공연 분야는 ’25. 5.～’26. 7. 약 23만건·약 960억원, 스포츠 분야는 약 26만건·약 130억원 규모의 부정판매 청약을 확인함. 평균 프리미엄은 약 2.5배이며 공연은 최대 16.2배, 프로야구 인기 경기는 최대 13배에 달함. 다만 모니터링 범위가 전체 플랫폼이 아니어서 실제 시장 규모는 2～3배 수준으로 추정됨.

○ (문체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1%가 암표 거래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재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92.4%가 동의하였으며, 개정법 인지도는 약 70%, 조항별 효과성 평가는 모두 80%를 상회함.

○ (문체부) 미국은 구매자 변심에 따른 취소를 제한하여 2차 판매가 유효하게 기능하나, 영국·프랑스·아일랜드·폴란드·포르투갈 등 유럽 대다수 국가는 최초 판매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며, 독일도 EU 차원의 논의에 맞추어 재판매 규제 법안을 논의 중임.

○ (문체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올해 자율적으로 시행한 판매가격 상한제 및 등록 수량 제한의 전후를 비교한 결과 게시글 건수·평균 판매가·평균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양도 불가로 판매된 공연도 500건 이상 게시되어 전량 정가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어 법령에 의한 규율이 필요함.

○ (문체부) 소비자 측면에서 암표상은 실관람 목적이 아닌 투기적 수요로 진입하여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권리자 측면에서는 노쇼 증가와 취소 수수료

수입의 부당한 귀속으로 기획사·아티스트에 부담이 발생하고, 산업·사회적으로는 제3자의 부당이익 취득과 본인확인 강화에 따른 비용·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함.

○ (OOO 위원) 2차 판매 플랫폼이 보유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이번 개정으로 기대하는 암표 근절 효과의 수준은?

○ (문체부) 2차 플랫폼 자료는 1차 판매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고기관이 기초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음.

○ (OOO 위원) 이 규제로 리세일(재판매) 시장 자체가 위축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권리자'를 공연자·기획자로만 한정하는 시각은 조심스러우며, 재판매 가격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직결되는 쟁점이므로 이해관계자에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검토의견이 포함되어야 함.

○ (문체부) 이 법은 재판매 시장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①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② 상습 또는 영업으로, ③구매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만을 규율함. 권한을 받은 사업자의 재판매(예: 구단이 정가 이하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이 법상 문제되지 않으며, 프랑스 법원 판결과 IOC·EU의 정책도 권한 없는 제3자의 재판매를 규율하는 방향임.

○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은 법률 제정 단계와 시행령 단계에서 각각 조회하였으며 모두 이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음.

○ (OOO 위원)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판매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신고기관·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설계된 점은 타당함. 다만 법률상 신고기관의 업무에 삭제 요청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 점이 확인된다면 수정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봄.

○ (OOO 위원) 취소분을 사업자가 정상가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암시장 유인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취소 수수료율(환불 조건)과 직결된 문제임. 전면 시행 시 단시간 내 대량 처리가 가능한지 등 집행 실효성에 대한 다각적 설명이 필요하고, 정책 성과를 나타낼 대표 지표가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리셀 플랫폼에서 한정판 운동화 등을 고가에 재판매하는 것과 티켓을 고가에 재판매하는 것의 본질적 차이는?

○ (문체부) 신발·의류 등의 리셀은 구매 후 사용가치를 향유한 뒤 재판매하는 구조이나, 티켓은 관람하여야 효용이 발생하므로 당일까지 취소가 가능함에도 재판매하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재판매가 아닌 한 영리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OOO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매크로에 따른 싹쓸이일 것인데 개정안에 이에 관한 단속·적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문체부) 종전 법은 매크로를 활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율하였으나 매크로 사용 여부를 신고기관이 확인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실효성이 없었으므로, 부정판매에서는 수단 요건을 제외하고 매크로 등 우회수단은 부정구매로 규율하도록 정비하였음.

○ (문체부) 또한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형벌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암표는 경제적 이득이 유인이므로 그 이득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국회·정부의 논의에 따라 과징금(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을 도입하였음. 단년도에 근절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이 암표가 사라진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OOO 위원)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 본인확인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 불편만 초래함. 법률이 정한 상습·영업 요건을 시행령에서 배제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반하여 있을 수 없으며, 긴급성(사용일자 임박, 고액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제시되어야 함. 아울러 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고시로 위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 상습·영업 요건을 제외하는 규정이 위임입법 일탈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해당 문구는 삭제할 예정임. 현장 판매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본인확인 조치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할 예정임.

○ (국조실) 실무적으로 신고기관이 상습·영업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의뢰 및 삭제·차단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설계되는지, 혐의를 받으나 문제가 없는 게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은?

○ (문체부) 상습·영업 요건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기준으로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습은 5년 이내 1인당 2회 이상,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아 판매규모·부당이득 규모를 반영한 부과기준표를 마련하고 있음. 소액인 경우 부과 제외 또는 감경 등을 검토하여 일반 관객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음.

(4) 위원회 논의

○ (OOO 위원) 문체부가 상습·영업 요건 제외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므로, 개선권고 문구도 '위임입법 일탈 가능성 검토 후 필요 시 수정'이 아니라 규제법정주의 위반에 따른 '삭제'로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함.

○ (OOO 위원) 현장에서의 집행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후규제영향평가 시 규제의 실제 효과와 집행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업계의 자율규제가 순수 자율규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통상 제재를 수반하는 위임형 자율규제로 설계한 후 그 작동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 (OOO 위원) 재검토 시 무엇을 목표치로 삼아 판단할 것인지(암표 게시 건수·금액, 티켓 취소율 등)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재검토기한은 2년으로 하되, 제도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규제 시행 이후 해외 플랫폼 등 규제 밖 경로로의 이전 여부, 티켓 취소율 등도 평가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국조실)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권고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안함.

□ 심의 결과 : 원안 동의 / 개선 · 부대 권고

○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부정거래 게시물 삭제 등 조치 의무는 판매자·중개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 다만, 판매자·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중 신고·수사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때 '상습 또는 영업 요건을 제외한다'는 문구는 위임입법의 일탈이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 현장 입장 시 본인확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 부정거래 의심 게시물의 임시차단 조치와 관련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는 고시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함.

○ 부정거래 수법과 온라인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신규 도입되는 제도로서 실제 부정거래 예방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권고**함.

○ 일반 국민이 게시물 삭제·차단 시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신고사무 처리·집행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신고기관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부대권고**함.